

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18
----------	-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폐지이유

- 「거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 설치 근거인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이 '08. 3. 28. 폐지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으로 개정됨에 따라,
- 개정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요건에 현재까지 해당되지 않아 「거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함.
-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는 거창군 일반회계가 승계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[법률 제9051호, '08.3.28., 폐지]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예산, 법무통계담당)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2016. 2. 03. ~ 2. 22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반 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.

②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.